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

(대표발의: 이민석 의원)

의안 번호	21-140
----------	--------

발의년월일: 2021. 11. .

발의자: 강명숙, 김기석, 김성희, 김영미,  
김진천, 이민석, 정혜경, 채우진,  
최은하, 한일용

### 1. 제안이유

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의 범위를 확대하여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사항을 개선하고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임

### 2. 주요내용

가. 「담배사업법 시행규칙」 ‘제7조제3항’을 ‘제7조제4항’으로 상위법 근거 정비(안 제1조)

나.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를 수행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를 특정 단체 등으로 한정할 경우 여타의 전문성 있는 단체의 진입이 봉쇄되어 경쟁을 제한하므로 사실조사 수행기관을 ‘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’에서 ‘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단체’로 확대(안 제2조)

다. 사실조사 관련 기관 및 단체 선정 기준 신설(안 제5조)

### 3. 관계법령: 「담배사업법 시행규칙」 제7조

### 4. 조 례 안: 붙임

5. 예산조치: 없음

6. 기타사항

가. 관계법령: 붙임

나. 입법예고: 2021. 11. 19. ~ 2021. 11. 24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담배사업법 시행규칙」 제7조제3항”을 “「담배사업법 시행규칙」 제7조제4항”으로 한다.

제3조제2호 중 “인력을 갖춘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나”를 “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”으로 한다.

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고,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(관련 기관 또는 단체 선정)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.

1. 사실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, 장비 및 기술수준
2. 사실조사 업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

제7조(종전의 제6조)제1항 중 “사실조사”를 “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”로, “현장조사”를 “현장조사,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사실조사”를 “관련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”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담배사업법 시행규칙」 제7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“관련 기관 또는 단체”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춘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.</p> <p>&lt;신 설&gt;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담배사업법 시행규칙」 제7조제4항 -----</p> <p>제3조(정의) -----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-----</p> <p>제5조(관련 기관 또는 단체 선정)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.</p> <p>1. 사실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, 장비 및 기술수준</p>

제5조 (생략)

제6조(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) ①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,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, 불공정한 현장조사 업무처리 비용 등의 명목으로 부당 징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.  
②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.

제7조 ~ 제9조 (생략)

2. 사실조사 업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

제6조 (현행 제5조와 같음)

제7조(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) ① 관련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를 -----  
----- 현장조사, 업무처리 비용 등의 명목으로 부당 징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.  
② 관련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 -----  
-----.

제8조 ~ 제10조 (현행 제7조부터 제9조까지와 같음)

## 【관 계 법 령】

### 「담배사업법」

제16조(소매인의 지정) ① 담배소매업(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)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.
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지정을 신청한 때에는 소매인 지정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20. 3. 31.>
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

가.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·피한정후견인

나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
다.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라.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
마.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(이 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)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바. 대표자가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

2. 청소년(「청소년 보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담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등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담배를 판매하려는 경우

3. 영업소 간의 거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

4.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

③ 소매인의 지정절차,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.

## 「담배사업법 시행규칙」

제7조(소매인의 지정절차 등)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소매인지정신청서에 점포(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)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,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청인이 해당 점포에서 담배소매업만을 하려는 경우에는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제1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. <신설 2014. 1. 29., 2017. 3. 7.>

1.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
2. 국가유공자증명서류,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(제10항에 따라 우선지정을 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한다)

3.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정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을 계산할 때 제8항에 따른 제조사 기간, 제7조의2에 따른 공고 후 신청서 접수 기간 및 「행정절차법 시행령」 제11조 각 호의 기간 등은 산입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0. 3. 3., 2014. 1. 29.>

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한 후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. <개정 2010. 3. 3., 2014. 1. 29.>

⑤ 제4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4항 단서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서를 지체 없이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신설



2010. 3. 3., 2014. 1. 29.>

⑥ 제5항 후단에 따라 사실조사서를 제출받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그 조사결과에 대하여 소매인지정 신청인 또는 인근 영업소(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 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를 말한다) 소매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<신설 2010. 3. 3., 2014. 1. 29., 2018. 12. 7.>

⑦ 제4항 단서에 따른 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매인지정 신청인 또는 인근 영업소 소매인은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재조사 요청서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. <신설 2010. 3. 3., 2014. 1. 29.>

⑧ 제7항에 따라 재조사 요청서를 제출받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3일 이내에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. <신설 2010. 3. 3., 2014. 1. 29.>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없음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 제2호에 해당

## 3. 미첨부 사유

-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없음

## 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관광일자리국 지역경제과 한승원
연 락 처	02-3153-8564